제2차 정기총회

2016. 3. 8.

KICCA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Korea Institute Of Certified Cost Analyst

제2차 정기총회

□ **일시** : 2016.3.8.(화) 오전 11시

□ **장소** : 팜스팜스 뷔페(3호선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T. 02-3474-0041)

□ **식순**

(개회사) : 국민의례 생략

Ⅰ. 회장인사
Ⅱ. 공로패 및 감사패, 운영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Ⅲ. 안건보고 및 의결

제1호 안건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 보고
제2호 안건 : 전년도(2015년도) 결산보고 및 의결
제3호 안건 : 금년도(201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 및 의결
제4호 안건 : 임원선임안 보고 및 의결
제5호 안건 : 정관변경안 보고 및 의결

(폐회사) : 참고자료 설명

□ **오찬** : 뷔페 식사

< 참고자료 >

① 원가분석사의 국가공인 및 주요 직무내용
② 최근 계약예규 개정내용(기획재정부)
③ 재정전략협의회 안건(기획재정부)
④ 공동주택 입찰가 자문역해당 유권해석(국토교통부)
⑤ 경력직 직원 특별채용 공고(방위사업청)
⑥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추진계획

Ⅰ. 회장 인사 말씀(제2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가분석사회가 국가로부터 승인받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총회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총회를 축하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내빈께 이 자리를 빛내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로 바쁘실 원가분석사 회원님들과 각 연구소 대표님들의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감회가 새롭고 원가분석사가 더욱 발전하기만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가분석사가 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공인검정 2년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격한 공인자격검정시험을 거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하여 600명 이상의 전문자격사를 배출하게 되었으며, 원가계산 용역의 품질향상과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의 뿌리가 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가 자격사 단체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원가분석사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필수요원으로 제도가 개선되었고 이제 각급기관에서 신규채용시 공인원가분석사를 채택하여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방위사업청이 직원특별 채용 시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인사채용 공고는 짧은 시간의 쾌거이며, 우리들의 자격증에 대하여 가치를 높이고 위상을 높이는 데 지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분석사는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원가계산·검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격사이지만, 정부 스스로는 예산 절약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은 원가를 절감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수익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이므로 우리 회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방위산업체 ,건설회사 및 일반기업 ” 등 요소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원가계산 용역, 물가변동 용역 등 수익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우리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업무영역 확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되어 회원 여러분의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최근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각종 원가감정 업무를 회원 여러분이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비롯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되고 있는 각종 원가산정 분야에 감정인으로서 회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은 직무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더 한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결정하는 입찰가격 자문업무 영역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건축사, 기술사 등이 중심이 되어 자문역 수행을 하였지만 지난해 우리 원가분석사도 자문역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원가분석사 발전이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공인 받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단순히 자격증만 획득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발전은 없으며, 전문성을 높여 다른 자격사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가계산연구기관에 40년 종사하면서 정부원가계산의 중요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용역기관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원가협회 발족과 동시에 원가분석사의 교육을 구상하고 추진하여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개인의 능력향상은 물론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갖추도록하고 원가분석사회에서는 분석사 취득자를 위한 교육에 진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여기 자리해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과 특히 한국원가협회 회장님과 지방계약원가협회장님 및 관계기관 여러분께서 우리분석사회가 잘 클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고, 자격증에 대한 가치와 지위를 높이며, 우수한 인재가 찾아와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 일을 「원가분석사회」가 한 중심에 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가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오늘 정기총회 행사가 참석하신 여러분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8일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회장 이 종 득

Ⅱ. 공로패 및 감사패, 운영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1. 공로패

① 방위사업청 서기관 권주택, ② 방위사업청 육군소령 최기일

귀하는 원가분석사 직무교육 실시와 검정시험문제 출제 등 공익적인 봉사직 수행과 공인원가분석사 자격증에 대한 가치 및 획득 필요성을 널리 알리어 전문자격사로서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6.3.8.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회장 이 종 득

③ 한화탈레스 그룹팀장 이상규, ④ 한화탈레스 과장 한기수
⑤ 한화테크윈 과장 이승진

귀하는 방산물자원가계산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을 획득하고 공인원가분석사 자격증에 대한 가치 및 획득 필요성을 널리 알리어 전문자격사로서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6.3.8.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회장 이 종 득

2. 감사패

① 한화탈레스 대표이사 장 시 권

귀하는 방산물자 원가계산, 방산법규 이해 등 직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사 소속 다수의 직원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공인원가분석사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어 전문자격사로서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에서 이 패를 드립니다.

2016.3.8.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회장 이 종 득

② (재)동양경제연구원 이사장 최 홍 석

귀하는 직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인원가분석사 자격증에 대한 가치 및 획득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으로 전문자격사로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3. 운영자문위원 (기수, 가나다순)

No	성명	소속	비고
1	권형식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공인1회
2	김수영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인1회
3	김수일	사)한국기업정책연구소	공인1회
4	남궁권	(사)한국물가협회	공인1회
5	노선애	사)한국기업정보연구원	공인1회
6	박태곤	(재)한국조달연구원	공인1회
7	배주홍	사)21세기국민경제연구소	공인1회
8	선명수	사)대한경제연구원	공인1회
9	손태운	한국산업정보연구소	공인1회
10	안상호	사)경영정보연구원	공인1회
11	엄봉석	재)한국산업발전연구원	공인1회
12	이길수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	공인1회
13	조수신	재)21세기지방자치정책연구원	공인1회
14	김태성	카톨릭대학교 회계연구소	공인1회
15	송성복	사)우리경제연구원	공인1회
16	최연희	사)중소기업경영전략연구원	공인1회
17	김정규	한국토목적산	공인2회
18	이건우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공인2회
19	강성덕	사)한국방위사업연구원	공인3회
20	권주택	방위사업청	공인3회
21	김종실	방위사업청	공인3회
22	배기수	충북대학교	공인3회
23	하호성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3회
24	남택주	한국산업정보연구소	공인3회
25	김창식	재)한국자치행정연구원	공인4회
26	김철상	재)건설산업정보연구원	공인4회
27	백순현	주)세종조달경영연구원	공인4회
28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공인4회
29	이장섭	전남대학교	공인5회
30	최정선	웅지세무대학	공인5회
31	이홍채	동양경제연구원	공인5회
32	임철희	사)건설경제연구원	공인6회
33	최학수	재)21세기지방자치정책연구원	공인6회
34	김영철	방위사업청	공인7회
35	박채규	경희대학교	공인7회

Ⅲ. 안건보고 및 의결

제1호 안건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 보고 및 의결

제2호 안건 : 전년도(2015년도) 결산보고 및 의결

제3호 안건 : 금년도(201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 및 의결

제4호 안건 : 임원선임안 보고 및 의결

제5호 안건 : 정관변경안 보고 및 의결

(제1호 안건)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금년도 추진계획

1. 자격증의 가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⑴ 지난해 추진실적
⑵ 금년도 추진계획

2. 원가분석사의 업무영역 확대 추진

⑴ 추진개요
⑵ 주요 추진대상 업무

3. 직무교육과 검정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⑴ 직무교육 부문
⑵ 검정교육 부문

4. 정부원가 및 계약관련 해설법규집 발간 추진

⑴ 발간목적
⑵ 주요내용

1. 자격증의 가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 지난해 추진상황

⑴ 원가분석사회 정부 건의내용(전문성 및 공신력 제고 방안 : '15.10월)

□ **원가계산·검토 공인 자격증을 갖춘 자로 인적 구성요건 보강**

○ 원가계산·검토 용역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단순 경력자 또는 단순 학위소지자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공인 자격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

□ **책임연구원도 원가계산·검토 공인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종 원가계산서에 확인·서명하는 책임연구원도 원가계산·검토 공인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용역기관 및 구성원에 대한 법적근거 상향**

○ 수행업무 및 전문자격사로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의 예규보다는 수행업무의 모법인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용역기관 및 구성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 단계씩 상향시켜 공신력을 높일 필요

(원가계산용역 수행기관 근거) 시행규칙→시행령으로 상향
(용역기관 인적요건 및 자격심사 등 근거) 예규→시행규칙으로 상향

⑵ 정부의 조치사항(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원가계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확충**"방안 발표('15.11.13일)

○ 정부는 한국원가분석사회의 건의내용을 검토하여 입찰·계약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재정전략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 재정전략협의회는 정부주요 재정정책사항에 대하여 경제부처장관이 협의하여 확정하는 기구임(경제부총리 주관)

<참고> 안 건 내 용

❶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정의규정·업무내용 등 법적 근거 정비 : 정의규정·업무내용 등 규정 신설, 현행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에 명시된 요건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❷ 중장기적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육성 및 민간의 활용방안 검토 : 원가계산용역기관 보유 인력요건 강화, 분석사에 대한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요건 강화, 민간업체의 계약수주 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 기대효과 : 원가계산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조정액의 적정한 산정 가능

☞ 조치시기 : 2016년도 상반기 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영

□ **공인원가분석사를 원가계산용역기관 인적구성요건에 포함조치('15.12.31)**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말 계약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우선적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인적구성 요건에 원가분석사가 포함되도록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반영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제1항 제2호

⇒ 구성원 10인 이상 중 : 국가공인원가분석사 6인 이상 또는 업무경력자 6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규정

< 신 구 조 문 >

종 전	현 행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생 략) 1. 용역수행기관 가. (생 략)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라. (생 략)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생 략) 1. 용역수행기관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라. (종전과 같음)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생 략)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생 략)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 이어야 한다. 다. (생 략)	나.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일 것)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다. (종전과 같음)
② (생 략)	② (종전과 같음)

나. 금년도 추진계획

⑴ 원가분석사 및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적근거를 상위 법령에 마련

□ 금년도 상반기 중 개정예정인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현행 규정 사항이 한 단계씩 상향되도록 반영추진(재정전략협의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음)

⑵ 책임연구원도 원가계산·검토 공인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종 원가계산서에 확인·서명하는 책임연구원도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은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도록 추진(지난해 건의사항 중 미반영 사항임)

⑶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도 반영 추진

□ 국가와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반영되도록 추진

*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개정된 사항을 차후 지방계약 관련규정 개정 시 반영할 계획

2. 원가분석사의 업무영역 확대 추진

가. 추진 배경

□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는 대부분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업무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저물가·저금리 현상이 고착화 되어 가고 있고 특히 건설산업 경기의 침체 여파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개발부담금 산정 등 건설경기 관련 용역업무가 대폭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용역업무도 과당경쟁으로 수주하기도 힘들며 덤핑으로 인한 수익성도 없는 상황임

□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①간접공사비등 원가산정에 관한 감정인 업무와 ②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가 상한 자문업무 영역을 새로운 일거리 창출대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나. 주요 추진대상 업무

법원원가감정업무 적극 수행

⑴ 지난해 추진상황

① 공사원가 감정 전문가 교육실시

□ **주관** : 사단법인「한국원가분석사회」(2015.7월.~9월)

□ **교육목적**

ㅇ 원가산정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보다 수준 높은 원가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자격 취득자 중 10년 이상 원가산정 경력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공사원가 감정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사비 산정에 관한 이론 및 계산실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 **이수과목 및 주요 강좌**

ㅇ 국가 및 지방계약법규 : 설계변경, 실비산정 등 계약금액조정제도 중심
ㅇ 공사비 산정 제도 및 실제 : 표준품셈, 법원 건설분쟁 사례 연구
ㅇ 건설공사 클레임 : 건설클레임 이론과 실무, 소송사례 연구
ㅇ 민사소송법, 채권법, 법원사무처리규칙 : 소송개관, 소장 작성, 계약총론
ㅇ 기타 실무사례발표 및 모의재판 실시 등

☞ **인증서 내용** : 위 사람은 자격기본법 제19조의 의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공인(제2013-05)한 원가분석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회에서 실시한 제1기 공사원가 감정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임을 증명함(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회장)

② 공인원가분석사의 원가감정 전문성 홍보

□ **홍보내용**

ㅇ 원가분석사의 법적근거, 공인내용, 교육실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가감정분야의 가장 전문성을 확보한 자격사라는 사항을 법원, 로펌, 건설회사 등 상대 기관에 맞게 문안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송부

□ **주요 홍보기관**

ㅇ 서울지방법원등 각종법원 건설소송 민사부(50곳)
ㅇ 김앤장 등 대형 로펌 건설소송담당 변호사(50곳)
ㅇ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회사(100곳)
ㅇ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2곳)

③ 현재까지 원가감정인 후보자 추천실적 (3건)

□ 법원, 로펌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의뢰가 있을 경우 한국원가분석사회에서는 각 회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당 분야의 실적과 경력, 교육이수 등을 고려하여 3명(Part)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추천

ㅇ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2015가합 513782 공사대금 등 청구)
ㅇ 서울고등법원 1건(2014나 36636 프로그램 개발·공급대금)
ㅇ 법무법인 정률 1건(민간건설 임대주택 건축비 원가)

⑵ 금년도 추진계획

① 원가감정업무 시장의 적극 참여 추진

□ 건축사, 기술사 등 타 자격사보다 원가감정인으로서 우월성을 홍보하여 우리 회원이 감정업무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 추진

ㅇ 금년도에도 자격내용이나 수행중인 업무 또는 전문교육 이수실적을 법원, 로펌, 건설사 등에 타 자격사보다 간접공사비 등 원가감정인으로서의 전무가임을 홍보

ㅇ 주기적 문서발송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을 실시하여 설명

□ 추천의뢰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철하고 해당 기관과 지속적 유대관계 정립

ㅇ 다른 자격사보다 원가산정 전문성이 높은 우리 회원이 감정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로펌 변호사 등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② 감정인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 **연구용역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업무 실시**

ㅇ 타 자격사에 비하여 경쟁력 입증은 연구용역의 품질에 있으므로, 원가분석사회에서(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를 구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

□ **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기연장 간접비 등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KDI)하고, 금년 상반기 중 실비산정 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

ㅇ 간접공사비 등 정부가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

* 가능한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강사로 초빙할 계획

③ 법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정인 후보자 추천업무 적극 추진

ㅇ 법원원가감정 등 감정인 업무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자격사로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가분석사회」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아 회원들에게 공지한 후 감정인 후보자를 엄선하여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

ㅇ 감정업무의 실적과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성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가 상한 자문업무 적극 수행

⑴ 지난해 추진상황

① 지침개정안 입법예고 시 명시 건의

○ 공동주택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 시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하도록 규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3항)

○ 동 규정에 건축사와 기술사만 자문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인원가분석사도 포함되도록 건의하였으나 자격사 종류가 많아 추가적으로 명시되지 못함

②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공인원가분석사도 자문역에 해당('15.11.27)

○ 지침개정안 공포 후 관계규정에 반영되지 못 하였지만, 공인원가분석사가 자문역에 해당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공인원가분석사 직무내용을 고려할 경우 "공인원가분석사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도 자문역에 해당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음

⑵ 금년도 추진계획

①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업무 기반조성

○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방문하여 입찰가격 상한 작성기준, 자문업무 수주요령, 자문비의 기준 등 자문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

○ 발주건별에 대한 입찰가격 작성요령 등 회원이 갖추어야 전문적인 업무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발주건수 및 금액 등도 파악

○ 자문역 경력이 있고 관심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처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실태파악이 완료된 후 공인원가분석사가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 작성요령, 사업자 선정 지침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회원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필요할 경우 국토부 관계자도 초빙 계획)

3. 직무교육과 검정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가. 직무교육 부문

⑴ 지난해 추진실적

① 공사원가 감정 전문가 교육실시

○ 원가산정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보다 수준 높은 원가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자격 취득자 중 10년 이상 원가산정 경력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공사원가 감정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사비 산정에 관한 이론 및 계산실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② 제조(일반 및 방산)원가실무교육 실시

□ 제조원가계산 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법규이해 및 실무능력 배양과 2016년도 방위사업청의 외부 발주 대비 직무능력 향상

○ 방위사업청에서는 약 150여개 사업(예산 : 약 15억원)을 선정하여 외부용역을 추진할 계획(유사 무기체계, 원가산정 방법 등)

□ 교육과목 및 주요내용

○ 원가관련 계약법규(국가계약제도 및 예정가격 개요, 정부 원가계산관련 계약법규, 방위산업계약에 관한 법규 및 방산물자 원가계산 관련법규 해설)

○ 제조원가 실무(정부 원가계산용역 수행을 위한 현장 실무사례 중심 해설)

○ 방산원가 실무(방산물자 원가계산 담당자들이 실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내용 해설 : 원가계산 시행세칙 중심)

*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초빙하여 실무교육 진행

③ 직무교육 실시

○ 원가분석사 및 원가분석사회 발전방안

○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규 내용 해설

* 초창기 관계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향후 적극참여 필요

⑵ 금년도 추진계획

□ 수익창출 위주의 전문교육 실시

○ 공인원가분석사 고유의 업무인 원가계산 업무뿐만 아니라, 법원원가 감정업무 및 공동주택 입찰가 자문업무 등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집중

○ 물가변동·설계변경·실비산정 등 계약금액조정업무와 입찰·낙찰 등 계약행정 업무 및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가격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

○ 교육과정 예시

❶ 정부물품(방산물자포함)의 제조원가실무과정
❷ 법원원가감정인 전문가 과정
❸ 정부공사의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실무과정
❹ 공동주택의 입찰가격 상한 자문업무 실무과정 등

□ 외부기관 직무교육 적극 참여

○ 방위사업청, 국방연구원, 방산학회 등 정부원가계산업무 및 계약업무와 밀접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내부 직무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원가분석사 홍보

○ 강사 및 교재는 내부 직무교육 강사 및 교재를 활요

□ 정부관계자 초빙

○ 정부정책방향 숙지와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산정 등 계약제도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 등 업무담당자를 외부 강사로 초빙

□ 기타 교육활성화 방안

○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교육 참여 시 회비만큼 감액하고, 미납자가 교육에 참여시 회비납부를 면제(교육비에 포함)

※ 연간 회비(10만원) 납부 실적이 저조하여 직무교육과 연계하고, 종신회비(100만원) 납부방안도 마련하여 참여율 제고

나. 검정교육 부문

⑴ 검정교육 교재의 내용보강 및 품질향상

□ 그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서술하고, 최신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는 등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확보

ㅇ 겉표지 디자인 변경, 지질향상 등 교재의 외견상 품질도 고려

□ 기타 개선사항

ㅇ 강사들의 열정적인 강의, 가급적 직접 주석하면서 학원식 강의 진행 요청

ㅇ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교재내용 수준 차별화, 강사 구분 등

⑵ 적극적 홍보 실시

ㅇ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 특별채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원가분석사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대학가 팜프렛 게시, 경제신문 등에 광고

4. 정부원가 및 계약제도 관련 해설과 법령집 발간 추진

⑴ 발간 목적

ㅇ 정부로부터 수주한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자격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유업무에 대한 종합적 해설과 법령이 담긴 전문서적이 필요한 상황

ㅇ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원가분석사회 홍보차원도 고려(실비 제공 예정)

⑵ 주요 내용

ㅇ 국가계약법령 중 원가분석사 업무와 밀접한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 실비산정, 물가변동, 설계변경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설

ㅇ 방위사업법령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 등 원가분석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계법령 해설도 수록

ㅇ 첨부되는 법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방산원가규칙, 개발이익 관련 규정 등 원가분석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주요법규 중심

☞ **책자 명칭(가칭) : 정부원가 및 계약제도 해설과 법령**

주요계정명세서 및 계정내용설명

***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2015년도 찬조금 기부명단**

계정과목	적 요	금 액(원)		비 고
찬조금			29,500,000	
	이 종 득	5,000,000		회장
	노 근 철	5,000,000		한국산업정보연구소
	김 현 철	5,000,000		건국대 산학협력단
	이 승 후	5,000,000		한국기업연구원
	최 원 갑	3,000,000		동양경제연구원
	신 동 엽	1,000,000		한국통계조사연구소
	이 직 수	500,000		한국경제정책연구소
	류 재 영	5,000,000		국제경제정보센터

(제4호 안건) 임원선임안 보고 및 의결

이사회 명단

No	직책	성명	직장명	비고
1	회장	이종득	사)한국원가분석사회	
2	부회장	노근철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3	부회장	이승후	사)한국기업연구원	
4	부회장	김현철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	전무	양창호	사)한국원가분석사회	
6	이사	남기호	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7	이사	성용무	사)한국기업연구원	
8	이사	한병우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9	이사	장운철	사)한국기업연구원	
10	이사	송원명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11	이사	박근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2	이사	최기일	방위사업청	**신임**
13	이사	권형남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신임**
14	이사	김민선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신임**
15	이사	성백춘	대구보건대학교	**신임**
16	감사	김대준	정동회계법인	
17	감사	이직수	사)한국경제정책연구소	

< 참고자료 >

1. 원가분석사의 국가공인 및 주요 직무내용

2. 최근 계약예규 개정내용(기획재정부)

3. 재정전략협의회 안건(기획재정부)

4. 공동주택 입찰가 자문역해당 유권해석(국토교통부)

5. 경력직 직원 특별채용 공고(방위사업청)

6.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추진계획

<참고1> 원가분석사의 국가공인 및 주요 직무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의 자격공인

○ 주무부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기본법」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가분석사”에 대한 자격을 공인하고 공인증서를 교부(기획재정부 제2013-05, 2013.12.30.)

* **공인** :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

□ 공인원가분석사 주요 직무

○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와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령” 및 관련 예규와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산정업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원가계산, 원가 검토, 개발비용 산정업무 등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용 하는 기관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단체 등에 납품,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위한 사기업 의 원가분석업무

○ 민간기업의 구매 및 판매가격 결정 담당부서, 견적입찰 담당부서, 원가관리, 공정관리 담당부서 등에서 필요한 원가분석업무

○ 상기업무와 관련 상담 또는 자문업무, 또는 부대업무

□ 공인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자격기본법제23조 및 제 30조)

○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 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참고2> 최근 계약예규 개정 내용

계약예규 개정(안)

2015. 12.

기 획 재 정 부

6 산학협력단의 입찰대리인 자격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 및 조달청 건의사항

○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부여**가 **가능**하나 용역입찰유의서 상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소수**의 **직원**이 **전국**의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로 인해 개선 필요성 제기

▢ 개정 내용

○ 「산학협력법」상 산학협력단의 경우 입찰대리인의 범위를 임·직원 뿐 만 아니라 연구원까지 확대

▢ 신구조문 대비표

○ 용역입찰유의서

현 행	개정(안)
제7조(입찰참가)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7조(입찰참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7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 · 요건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연구소는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산학협력단은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에서 배제**

-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소를 산학협력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원가용역기관의 대상규정을 정비**할 필요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보유 요건*에 **공인원가분석사** 포함 필요

* 최소요건: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6인, 이공계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 개정 내용

○ 「산학협력법」상 **산학협력단을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에 포함**

○ 원가계산용역기관 인력보유 요건에 **공인원가분석사를 포함**하되,

-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행 원가계산업무 경력자와 선택적으로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예정가격작성기준

현 행	개 정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① (생 략) 1. 용역수행기관 가. (생 략)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 라. (생 략)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①(생 략) 1. 용역수행기관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 라. (현행과 같음)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생 략)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 이어야 한다. 다. (생 략)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생 략) 나. 다음 요건을 갖춘 인원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일 것)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현행과 같음)

< 참고3 >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
15-11-13 (보고안건)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

2015. 11. 13.

기 획 재 정 부

3 원가계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확충

1 **(현황)** 원가계산은 **계약 목적물의 단가**를 산정하는 작업으로 **예정가격 산출, 계약금액 조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업무

○ 전문성을 요하는 원가계산 업무에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용역기관 제도 운용**(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 **계약금액 관련 분쟁**의 증가, **원가구성이 복잡한 계약유형**의 출현 등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긴요**

- 그러나, **대부분의 용역기관이 영세**(전체 기관 중 75%가 20인 이하)하여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보유인력	1~10	11~20	21~30	31~40	40~
업체 수	18	50	14	5	5

2 **(개선)** 원가계산인력의 인프라 강화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정의규정·업무내용** 등 **법적 근거 정비***

* ① 정의규정·업무내용 등 규정 신설, ② 현행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에 명시된 요건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 중장기적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육성** 및 **민간의 활용방안** 검토

* (**개선방안 예시**) ① 원가계산용역기관 보유 인력요건 강화, ② 원가분석사에 대한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요건 강화, ③ 민간업체의 계약수주시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원가계산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조정액의 적정한 산정 가능

4 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1 **(현황) 공공발주 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 증가**로 **사회적 비용 증대** 및 **예산낭비 발생**

○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빈번히 발생**(업체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기연장 발생비율은 31%)

○ **관련 소송**도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

* 최근 10년간 소송사건 30건 중 63.3%(19건)가 최근 3년('12～'14)에 발생하였고 피고(정부기관 등) 패소 비율은 76.7%(23건)

2 **(개선)** 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규정의 보완**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및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구체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 공기연장 간접비 등과 관련 연구용역 수행 중 ('15.7～12, KDI)

** 발주기관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거부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 **분쟁조정**의 대상에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을 **추가**하여 **운영**(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4.11월)

- **공공기관**의 **계약분쟁 사항***도 **조정 대상**으로 **확대** 추진

*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과정에서의 분쟁사항만 해당

- 분쟁조정 대상 확대 추세에 따라 **사무국 설치** 및 **인력보강 추진**

☞ **(기대효과)** 합리적 조정기준 제시 및 분쟁조정 활성화로 **소송비용절감** 등 **국민 편익 증진**

Ⅳ. 과제별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담당부처 ·협업기관	일 정
1. 입찰·계약비리 근절 및 계약투명성 강화		
· 경쟁입찰 특례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기재부, 조달청	'16.상
· 구매규격 사전공개 등 정보공개 내실화	기재부, 조달청	'16.상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입찰투명성 제고	기재부	'16.상
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 담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도입	기재부	'16.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재부	'16.상
· 부당납품 조달행위 감시·조사 강화	기재부, 조달청	'16.상
3. 계약 및 조달시스템 선진화		
·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및 단계적 확대	기재부	'16 ~ '17
· SW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주체계 수립	기재부, 조달청	'15 ~ '16
· 원가계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확충	기재부	'16.상
· 간접비 등 계약금액조정제도 합리적 개선	기재부	'16.상

< 참고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 토 교 통 부

수신 한국원가분석사회 귀하 (우06658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2-2 (서초동)2층)

(경유)

제목 민원회신(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 해당 여부 질의)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원가분석사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3항의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의견>

○ 입찰가격의 상한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45조의6에 따른 적정성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가분석사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그 업무의 수행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 지침의 입찰가격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전성이 시설사무관 전결 2015. 11. 27. 문종진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9169 (2015. 11. 2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68 팩스번호 044-201-5684 / jsi1115@molit.go.kr / 비공개(6)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참고5 >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5 - 55호

방위사업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12일

방위사업청장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코드번호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3-AD-4	계약관리	원가제도 개선	서기관	1명

임용예정기관	근무예정직위
계약관리본부	원가총괄팀장

주요 업무	○ 원가업무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 방산물자 및 일반물자의 제비율 산정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관리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전문가적 능력(종합적 판단력/정책결정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문제의 사전예측과 예방/해결방안 도출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필요 지식	○ 국가계약법 등 정부 계약·원가에 대한 지식 ○ 방위사업법 등 방위력개선사업 사업관리/계약/원가에 대한 지식 ○ 회계학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법률, 행정, 회계, 원가, 무역, 국방획득** *국방획득 – 군수품의 구매,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	
	경력	○ 관련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이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8년 이상 경력이

처음으로

<table>
<tr><td rowspan="3">시
자
격
요
건</td><td></td><td></td></tr>
<tr><td>경력</td><td>○ 관련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이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td></tr>
<tr><td>자격증</td><td>○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td></tr>
<tr><td></td><td>학위</td><td>○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td></tr>
<tr><td colspan="2">우대요건</td><td>○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어능통자로서 어학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텝스
(TEPS)</th><th rowspan="2">토익
(TOEIC)</th><th colspan="2">토플(TOEFL)</th><th rowspan="2">지텔프
(G-TELP)</th><th rowspan="2">플렉스
(FLEX)</th></tr>
<tr><th>(CBT)</th><th>(IBT)</th></tr>
<tr><td>점수</td><td>625점
이상</td><td>700점
이상</td><td>197점
이상</td><td>71점
이상</td><td>Level 2
(65점 이상)</td><td>625점 이상</td></tr>
</table></td></tr>
</table>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코드번호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3-IC-5	계약관리	물자조달 관리	공업사무관(화공)	2명

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계약관리본부	물자규격팀, 급식유류계약팀

주요 업무	○ 국방규격 제개정, 기술검토 및 형상관리(변경, 완화 및 면제) ○ 물자 조달계획 수립 및 공고, 입찰, 계약, 사후관리 ○ 계약방법 분석 및 계약관련 제도개선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논리적 사고, 대인관계

필요 지식	○ 조달절차 및 관련법률, 계약에 관한 지식 ○ 국방규격/구매요구서 관련 제도·규정·방침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지식 ○ 방위사업법령 및 국방사업관리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화공, 화공안전, 화학, 식품**	
	경 력	○ 관련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이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직급 상당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격증	○ 화공, 화공안전, 식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학 위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코드번호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3-AD-6	계약관리	계약제도 운영	행정주사(회계)	1명

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계약관리본부	조달기획관리팀

주요 업무	○ 계약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 ○ 조달원 관리 및 계약심의회 운영 ○ 조달계획 현황 자료작성 및 집행현황 관리/결산

< 참고6 >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추진계획

□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경쟁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긴급공고:10일)	⇨	제안서평가/ 업체선정 (5일)	⇨	보안측정/ 신원조회 (20일)	⇨	협상/ 계약 체결 (5일)

* 행정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공고를 원칙으로 추진(총 소요일 : 약 40일)

□ 일반사항

○ (대상사업) 집행시기, 복잡도 등 고려 유형별 약 150여개 사업 선정 예정(예산 약 15억원)

※ 매회 입찰공고 시 세부사업 확정 예정(15~20개)

○ (집행계획) 150여개 사업을 유사 무기체계, 원가산정 방법 등 유형별 묶음 판단하여 1회 입찰공고 시 약 15~20개 사업 일괄 발주

○ (용역 수행내용) 업체 제출가에 대한 합리성·적정성 검증

- 재료비 : 재료의 실소요량 검증, 재료 단가의 적정성 검증
- 노무비 : 노무공수의 적정성 검증(필요시 기술전문가 활용)
- 경 비 : 직접경비 발생내역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검증
- 공통원가/제비율 : 방위사업청에서 통보한 기준 적용

* 정에서 공통원가 미 산정된 사업은 용역기관에서 산정

※ 대상사업 및 집행시기는 조달집행 일정 고려 변동될 수 있음

○ (용역기관 선정)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20점) 합계 점수의 고득점 기관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추진일정

○ 상반기 입찰공고(약 100여개 사업) : '16. 3월 ~
○ 제안서 평가 및 보안측정 : '16. 3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16. 4월 ~ 5월
○ 하반기 입찰공고 및 용역기관 선정/계약체결 : '16. 6월 ~ 7월

* 제2차 정기총회 사진

* 제2차 정기총회 사진

제 2 차 정기총회
일시 : 2016. 3. 8. (화) 오전 11시
KICCA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제 2 차 정기총회
일시 : 2016. 3. 8. (화) 오전 11시
KICCA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

* 제2차 정기총회 사진

제2차
일시 : 2016. 3. 8. (화) 오전
KICCA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

제2차
일시 : 2016. 3. 8. (화) 오전
KICCA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

제2차
일시 : 2016. 3. 8. (화) 오전 11시
KICCA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